

『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제출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환경교통국장 남병국

나. 제안이유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(2021. 4. 1.시행)에 따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1조)

-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화학물질관리법」 ,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,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,
「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」
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은
 - 상위법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이 개정('21.4.1.시행)됨에 따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 - 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비율을 확보하는 등

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화학사고 영향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